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개정번호	3		페이지	i

제 • 개정이력서

3	개 정	2020. 5. 29.	서 명 완
2	3 Page 일부개정 (교육프로그램)	2011.10.01.	서 명 완
1	개 정	2006.02.22	서 명 완
0	제 정	2002.08.12.	서 명 완
개정번호	개정 페이지 및 내용	개정일자	승인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개정번호	3		페이지	1

목 차

<u>항 목</u>	<u>페이지</u>
1. 목적	2
2. 적용범위	2
3. 임직원의 의무	
3.1 공정거래의 준수	2
3.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
3.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4 사전업무협의 의무	3
4.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3
4.2 권한 및 직무	3
4.3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3
4.4 회사의 지원	3
5.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5.1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보완	3
5.2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5.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5.4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3
5.5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4
6. 보고 등	
6.1 보고	4
6.2 개정 주기	4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제정번호	3		페이지	2

1. 목적

본 규정은 SK 가스주식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하여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숙지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임직원의 의무

3.1 공정거래의 준수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에 임해야 한다.

3.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장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합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3.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2)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3)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책략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제정번호	3		페이지	3

- 6)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4 사전업무협의 의무

-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산하의 법무그룹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2) 각 부서장 등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에 의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는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 4)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전 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사내 인트라넷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공표되어야 한다.

4.2 권한 및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의 직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계획 수립, 운영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
- 3) 공정거래 관련 법규정 위반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4)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사건의 처리를 주관
- 5) 공정거래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6)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역할
- 7) 기타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회사의 지원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제정번호	3		페이지	4

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5.1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보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보완하여야 한다.

5.2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5.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자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4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HR 그룹 또는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시정요구: 자체점검 실시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의, 경고, 재교육: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나, 법 위반 정도가 미약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주의, 경고 또는 재교육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전 항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상습적인 위반행위 또는 법 위반 정도가 커서 회사에게 심각한 명예실추 및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인사 조치와 관련된 심의를 HR 그룹 또는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5.5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 부서에 이를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 2) 임직원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업무 담당 PL 이 실시하며, 동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상기 조항에 의한 제보는 그 비밀이 준수되어야 하며, 해당 제보를 한 임직원 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일자	2020.5.2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	분류번호	II-조직-30
제정번호	3		페이지	5

6. 보고 등

6.1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활동의 전반적 운영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6.2 개정 주기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은 연 1회를 주기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끝】